

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자치구의 사전절차(조례제정·민간위탁 동의) 지연에 따른 노동복지 시설의 지역별 편중 해소 및 서울시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·운영 추진
- 나. 도심권은 교통·상권 중심지로 (유동)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종로·용산구 등 센터 설립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·실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
- 위치 : 종로구 율곡로 56(운현하늘 빌딩 10층)
- 규모 : 264.46㎡
- 공간구성
 - 회의, 세미나, 지역 노동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 조성
 - 각종 행사시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변형으로 구성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9.9.1 ~ 2022.8.31) 예정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(안) : 당해연도 419백만원

(공간 임차료 및 인건비, 사업비 등)

- 위탁업무 :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
 -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
 -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각종 기획, 관리, 홍보 등 사업추진
 -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·교육
 -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
 - 문화·복지·취업지원·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효율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전문 기관(노동단체)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,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민간 협력 등 양질의 노동복지서비스 제공

※ 직영 시,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 발생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및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,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개선팀 김지현(☎2133-5418)